

우리나라 남자 운동선수 대상 병역 제도에 대한 합리성과 형평성에 대한 연구

황호영

공주대학교 생활체육지도학과

A Research on Rationality and Equity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gainst Athletes in Korea

Ho-Young Hwang

Dept. of Life Sports Educators,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국가에서 국민에게 부과하는 사회적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합리적이고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만 18세 이상의 건강한 남성 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39조 1항과 병역법 제3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 의거 매우 강하게 처벌된다. 물론 이것은 전문적인 운동선수 또한 예외일 순 없다. 하지만 운동선수의 경우를 고려할 때,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한 가지 논의점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을 근거로 하여 운동선수 대상의 병역제도를 분석하고, 이 가운데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체계적 문헌고찰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방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의 말미에 운동선수의 병역과 금전 등 이중혜택 금지, 병역비리 사후자 관리 제도 신설, 군경스포츠 조직의 차별없는 아마추어화 등 총 3가지의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운동선수가 겪고 있는 병역에 관한 고충과 비합리성 및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수정 및 제안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의 병역의 의무에 대한 제도적 발전과 운동선수에 대한 그 처우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주제어 : 병역제도, 형평성, 합리성, 프로스포츠, 아마추어 스포츠, 엘리트 선수

Abstract Social obligation of a nation must be assigned to the people, legally belong to the nation. The Republic of Korea assigns a social obligation to the Koreans, the Military Service which is regulat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litary Service Law of Korea. However, behind the law, a serious discussion, the rationality and equity, is possibly discovered from the reality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gainst athletes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gainst athletes of Korea based on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Military Service Law of Korea. Three proposals, prohibit duplicated benefits of athletes, military service evasion after care system and keeping the military and police sport organization as nonprofessional, to recover the institutional problems regarding the equity and rationality were suggested in the end of this research. With the results, this research hopeful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port law, fundamental obligation with sports and the military service system on athletes in Korea.

Key Words : Equity, Rationality, Military Service System, Professional, Amateur Athletes, Elite Athletes

* 본 연구는 국립 공주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지원으로 이루어졌음.

Received 31 March 2016, Revised 29 April 2016

Accepted 20 May 2016, Published 28 May 2016

Corresponding Author: Ho-Young Hwhag

(Kong National University)

Email: hyhwang@kongj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서 그 정책적·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1].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병역의 의무는 국가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대한민국 남성에게 부과된 의무로서,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거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병역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병역 의무 대상자를 성인 남성으로 규정하고 있다[2].

이와 같은 대한민국 남성에 대한 병역의 의무의 적용 대상에 있어 전문 운동선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3, 4].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서 규정한 대로 그들 또한 대한민국의 남성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특히 출산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병역 자원의 활용 폭이 급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2015년 현 시점을 고려할 때, 남자 운동선수는 더욱더 예외될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병역의 자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와 [5]의 연구에서 보고한 결과에 근거할 때, 남자 운동선수와 병역의 관계는 현대적 개념의 병역의 의무가 최초 발생한 1951년부터 그 시발점을 찾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기 시작한 이후로 이 두 개념은 떼려야 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의할 수도 없는 매우 복잡 미묘한 관계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주된 원인으로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대 시기가 전문 운동선수에게는 선수로서 경력의 전성기와 그 시기가 같은 시기로 규정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다양한 병역에 대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6].

병역법 제8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 최초 실행 시기는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8세~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이해되고 있다[6]. 하지만, 이 연령대는 남자 전문 운동선수에게는 대학교 진학과 대표팀 선발 혹은 프로팀으로의 진출 등 그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이 시기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운동선수로서 선수로서의 생명을 포기하거나 혹은 그 미래를 잠시 연

기해야 함으로써 전성기를 놓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전문 운동선수에게는 실로 그들의 삶에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7]. 이러한 주장에 관하여 [8]은 우리나라의 각 프로스포츠 구단에서 선수의 병역 의무는 구단의 인적자원 전략 및 선수 구성 전략 중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전략 중 한 가지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병역특례제도와 국군체육부대이다[3, 4]. 하지만 이 제도들 역시 모든 운동선수가 수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 운동선수의 병역을 위한 대안으로 이해하기엔 다소 부족한 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와 같은 딜레마 가운데 놓인 어느 운동선수가 자신에게 처해진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기존의 규정을 초과한 범위(이미 병역 면제 범위에서 벗어났으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적용을 통하여 입대가 연기됨)에서 혜택을 받은 경우를 선례로 하여 본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병무청의 해석에 따라 거부되었으며, 현재 해당 선수는 입대를 앞두고 있다[8].

이 사건은 무엇보다 전문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 남성에게는 부여되지 않는 입대 연기 혹은 면제 제도 혜택의 존재와 같은 병역 혜택 대상자에게도 다르게 적용되는 병무청의 재량권의 범위와 합리성 및 형평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상당한 잠재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남자 전문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병역 의무 혜택에 대한 이해의 당위성을 차치하고서라도 병무청에서 이미 한번 처리하였던 타 종목 운동선수와 차기 같은 경우에 대하여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등, 병역 혜택의 적용 기준이 일관성이 없거나 혹은 명확하지 않았던 데서 나타난 자가당착의 문제점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제도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병역법에 대한 근시안적인 해석과 적용은 병역 비리, 병역 기피 및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 유학이나 국적 포기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를 유발하곤 하였으며[9], 이는 다시 사회적 위화감 조성 및 상대적 박탈감 등 또 다른 종류의 사회적 불안 요소의 씨앗으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병

역 자원이 급감하고 있는 2015년 현재 시점에서 남자 운동선수에 대하여 기존의 전문 운동선수에 대하여 부과하던 병역 의무 부과 및 면제와 입대 연기 혜택 기준을 동일한 시각에서 부여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으며[10], 이를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안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때, 남자 전문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 제도는 군 복무 시기가 감소하고, 병역 자원은 날이 갈수록 급감하는 등,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고 있다[6]. 이것은 향후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 적용해야 할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남자 전문 운동선수의 병역에 대한 형평성과 합리성에 대한 그 학문적 근거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하고, 또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커녕 불신만 날로 커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은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연구 문제 및 목적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대한민국 남자 운동선수 대상 현행 병역법에 대한 법제도적 형평성은 헌법적 근거를 만족하고 있는가?
- 연구문제 2. 대한민국 남자 운동선수 대상 현행 병역법에 대한 법제도적 합리성을 논할 때, 어떠한 불합리성이 존재하는가?
- 연구문제 3. 현행 병역법상 운동선수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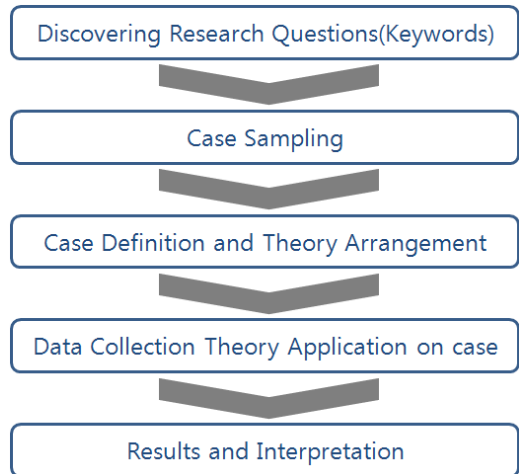
각종 재원이 매우 제한적인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산업의 현주소를 고려할 때, 현재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병역의 의무와 더불어 남성 전문 운동선수로써의 역할 모두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동시에 달성해 낼 수 있는 대안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 남자 운동선수 대상 병역 제도에 대한 형평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그 법제도적 근거를 찾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발견된 병역 특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전적 제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는 사회적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에 대하여 운동선수가 받는 특혜와 관련하여 일반인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과 형평성을 법률적 근거에서 바라보고, 이 가운데 발생하는 다양한 모순들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진행된 연구이다.

자료 수집의 방법에 관하여, 스포츠 법 분야 관련 논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11]이 제시하고, [12]이 응용하여 사용한 바 있는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Systematic Review Methodology)을 사용하였다. 문헌의 검색과 분석은 온오프라인 상의 문헌 검색을 위한 검색어 및 주요어는 ‘법률적 형평성’, ‘병역의무’, ‘사회적 의무’, ‘운동선수 병역’, ‘국군체육부대’, ‘상무부대’, ‘병역법’, ‘대한민국 헌법상 병역의무’, ‘경찰청’, ‘헌법상 병역’ 등으로 선정하여 국내학술데이터베이스 검색사이트 RISS(한국학술정보), Google Scholar, 및 국회온라인도서관 등을 이용하였다.



[Fig. 1] Research Process

본 연구는 이미 체계적 문헌고찰법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13]와 [14]의 문헌 고찰 및 사례 연구법을 위한 절차를 인용 및 차용하였고, 이를 다시 본 연구

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검색을 위하여 앞서 키워드 및 주요어들을 조합하여 검색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집된 DB는 총 374개의 1차 문헌 자료를 약 6개월에 걸쳐 확보하였으며, 연구방법론에 관한 전문가 1인과의 협의, 법학 전공 교수 2인의 헌법학적인 의 및 본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거쳐 최종 98건의 문헌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가운데 본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인용절차를 통해 활용된 문헌 자료는 총 32건이었다.

3. 병역의 의무

3.1 구성원의 기본 의무로서의 병역의 의무

국가 혹은 조직사회가 등장하기 시작한 인간사회에서 해당 조직의 발전과 안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책임들이 구성원의 기본 의무라고 정의되고 있다[15]. 이러한 구성원의 기본 의무는 현대사회에 들어서서 선거와 투표라는 매우 민주적인 조직 구성 수단을 통하여 무엇이 어떻게 누구에게 부과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되었다. 이러한 구성원의 기본 의무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의무는 누구에게나 부과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완성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대 국가 및 조직 사회에서 선거와 투표를 통한 대표성이 있는 구성원으로 인하여 결정된 사안이라면, 반드시 예외가 존재해서는 안 됨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원의 기본 의무 중 한 가지가 바로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인 병역의 의무이다. 우리나라 병역의 의무는 북한과 휴전 상황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 체제의 안정성과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된 기본적 의무이다. 이에 대하여 [16], [17]은 병역 의무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이며, 이것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부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남성에게 한정된 병역의 부과 및 이를 근거로 한 가산점 제도, 제대 군인에 대한 국민 연금 및 의료건강보험의 혜택 등은 군필자와 미필자, 남성과 여성 등 다양한 구성원 간의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결국 병역의무수행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3.2 운동선수의 병역의 의무

이와 같은 병역의 의무로부터 운동선수는 그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대로, 그들의 생활양식이나 혹은 직업적 운동선수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위상의 재고에 기여가 인정되는 인원에 한하여 대체 복무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사실 운동선수 대상 병역 의무 제도에 관하여 [3]이 이미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그 변천 과정을 정리하였다. 현행 병역법은 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 4685호에 의거 전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복무기간 단축과 방위병 제도 폐지 및 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개정되었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동법 제2조 9호, 제29조 3호, 제31조에 의거하여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병역 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02 한일 월드컵 4강, 2006 World Baseball Classic 4강 등의 주요 국제대회 성적을 바탕으로 하여 일부 시행령이 일정기간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이들은 형평성과 예외 사유의 확대 등과 같은 사회적 지적을 바탕으로 하여 모두 폐지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운동선수가 수행할 수 있는 병역 의무의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4, 6]. 첫째, 만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성에게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일반병 입대(육군·해병은 1년 9개월, 해군은 1년 11개월, 공군은 2년이며 연장 가능), 둘째, 상무부대 및 경찰청 등 대체복무부대 지원, 셋째, 정부에서 인정하는 국위선양의 객관적 기준(한국신기록, 올림픽 동메달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정부가 인정하는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등)을 만족한 뒤 받을 수 있는 병역특례, 그리고 끝으로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을 통한 대체복무제도(공익근무요원) 등이 그것이다.

3.3 국군체육부대 및 경찰청

운동선수 대상 병역 제도를 연구하면서 가장 특이한 제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국군체육부대(이하 상무부대)와 경찰청 소속의 체육단체를 운용하는 것이다. [18]은 국군체육부대에 대하여 기본 의무의 평등한 부담과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 아래 신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입대를 통하여 그 가치의 저하가 우려되는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여 신체 능력의 유지와

국민으로써 지켜야하는 기본 의무의 수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제안된 정책이라 하였다. 세부적으로 크게 상무부대와 경찰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상무부대는 1982년 18개 종목 육군체육지도대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1984년 1월 체육 정책의 강화를 위한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하여 창설된 부대로써, 아시아 경기 대회 준비와 올림픽 유치를 준비하는 것을 실질적은 목표로 하여 창설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군 체육부대는 각 부대별로 분할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나, 상무부대의 창설로 인하여 21개 종목 4백여 명의 선수를 일관 관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15년 현재 33개 종목, 543명의 선수단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19]에 따르면, 국군체육부대의 창설은 병역법에 근거하고 있어, 선발 방법이나 복무 방법 역시 병역법에 근거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키가 200cm상이거나 혹은 체중이 159kg 이상인 자는 복무가 불가능하며, 이에 병역법이 허가하는 자에 한하여 대체복무가 가능하다. 입대 방법 또한 현역병과 다르게 치러진다. 일반적으로 고지에 따른 의무 입대 방식과 다르게 상무부대는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선발 과정에 지원 자격을 가진 응시자가 통과할 경우에 한하여 입대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아마추어 및 프로 운동선수 모두 지원할 수 있다.

4 운동선수 대상 병역 제도의 법률적 근거

4.1 대한민국 헌법

[20]은 국가 구성원의 기본 의무를 규정함에 있어서, 그 근거는 반드시 헌법에서 법률적 기초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진다.’ 규정되어 있어 그 헌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근거는 병역 의무에 대한 헌법 규정이 합헌적 법률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존재한다. 즉, 헌법 제39조 1항이 합헌적 법률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에 대하여 준수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동시에 운동선수 병역 제도에 대한 근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귀결되기 때문이다[21]. 실제로 2014년 3월 11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남성에게만 부과됨이 규정되어 병역의 의무에 대한 합헌성을 인정하였다[22]. 이 판결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변하지 않는 기본 의무의 가치이다[23]. 대북 대치상황, 강대국 간의 정치적·지리적 관계 등 매우 중요한 위치에 처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병역 의무가 최초로 발생한 1949년 이후로 변하지 않는 대북대치국면의 정치 상황 등 남성의 사회적 기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병역 의무는 거부할 수 없는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부과된 기본 의무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병역 의무의 부과에 대한 합헌 판결을 통하여 나타난 두 번째 의미는 기본 의무에 대한 법제도적 안정성의 확보이다[2, 21].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교육, 근로, 납세, 병역 등 4대 기본의무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반드시 지키고 준수하며 복종해야하는 의무이며,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국방 정책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24]. 특히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되는 병역의 의무는 북한과의 휴전 상황 및 치열한 강대국들의 경쟁 등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주요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방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병역의 의무에 대한 개념의 전환이 결코 긍정적인 결과만을 도출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것은 상당한 비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제시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 기본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추진하고 지켜야하는 국방 정책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병역의 의무에 대하여 위반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추론된다.

결국, 병역 의무의 합헌 판결은 대한민국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병역 의무 수행 형태는 그 법률적 근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정책적 합리성 또한 충분히 입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대한민국 병역법

운동선수 대상 병역 제도의 합리성은 헌법 외에도 대한민국 병역법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병역법 제3조 1항의 설립 근거가 헌법 제30조 1항에 존재하기 때문이다[6].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의무중 하나인 병역 의무를 그 근거로 하여 그 실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헌법상 근거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된 바 있는 남성 병역 의무 합헌 판결 사례는 병역법 제3조 1항에 명기된 '남성에게만 국한된 병역 의무'에 대한 위헌 소송이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 후술에 따르면 최적의 전투력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국방 현실 속에서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하여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병역 의무의 합리성에 대하여 판단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평등권에 기초하여 제기된 소송인만큼, 병역 의무에 대한 합리성 자체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5. 운동선수 대상 병역 제도에 관한 논의

5.1 제도의 합리성에 관한 논의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실행하는 병역 제도에 관하여 어떠한 부분에서도 불법이라거나 혹은 불합리한 점은 존재하지 않았다. 쉽게 이야기하면, 불법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 가지 논의점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헌법과 병역법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실무 인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상당수의 전문 운동선수들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곤 한다. 이에 대하여 [25]은 이들의 공익근무 판명 기준에 대하여 대중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하였다. 달리 이야기하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하는 제도 실행 절차에 개인의 의도와 주관이 개입될 요소가 지나치게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정부의 권한의 영역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22], 제도의 취지와 절차에 따른 합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을 찾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2 형평성에 관한 논의

운동선수 대상 병역 제도의 합리성과 달리 형평성에 관한 논의는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크게 제도 내 형평성과 제도 외 형평성 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3, 4].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드러나는 논란은 비운동선수, 즉 일반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제도의 형평성의 논란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어떠한 사유로든 법 앞에서 차별이 존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운동선수 대상 병역 제도를 살펴보면, 이러한 차별에 대하여 상당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20대의 청년들이 국위선양을 위하여 봉사하는 가운데, 그 혜택으로 병역을 면제해주는 것은 한편으로는 당연한 행정 처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좀 더 비판적으로 논의하면, 마치 20대의 중요한 시기가 운동선수에게만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고, 동시에 국위선양의 기회는 운동선수에게만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매우 큰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끔 언론 매체를 통하여 발표되는 연예인 대상의 병역 면제 의혹 사건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오히려 그들의 병역 면제 시도 행위는 불법이지만, 운동선수의 병역 면제 시도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비약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병역 제도는 그 숨은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 하겠다.

또한, 운동선수들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도출했을 경우, 이와 관련하여 원, 격려금, 연금, 상금 등이 지급되는 현실적인 이익들을 고려해 볼 때, 일반인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클 수 있다는 또 하나의 논의점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26].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하는 법 앞에서 특혜를 통하여 의무에서 면제됨과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누릴 수 없는 금전적 혜택까지 누린다면, 이를 과연 진정한 평등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회적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이에 국제대회를 통한 병역 특례 제도는 유지하되, 이를 통한 금전적 이익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등 이중 혜택에 대한 제한을 두는 제도의 신설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운동선수 대상 병역 제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존재하는 또 하나의 논의점은 [3]이 이미 지적한 바 있는 제도 내, 즉 운동선수와 운동선수간의 형평성이다. 현행 운동선수 대상 병역 특례제도는 매우 소수에 국한되어 있다. 즉, 병무청에서 설정하고 있는 기준을 만족한 선수에 한해서만 그 혜택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6]의 연구에서는 이것을 수치화한 보고도 존재한다. 정작 병역 특례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혜택을 받은 운동선수는 1973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797명이라 하였는데, 이는 전체 운동선수 대비 8.78% 정도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 수치를 어떠한 기준에서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여 시행하는 병역 특례 제도의 취지와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8.78%의 선수에 대하여 병역 면제의 혜택을 주는 것에 신체적 나이를 이유로 하여 정당화한다면, 반대로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 선수의 희생의 가치가 상당히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제시한 바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비추어 볼 때, 또 하나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또 하나의 위헌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따라서, 운동선수의 직업적 특성 및 비교 대상간의 형평성 등 모든 논의점을 고려할 때, 입대시기에 대하여 선수 경력 이후에 대한 선택권(대체복무 선택 시 제외)을 주는 방안이 현재의 형평성 격차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다[27]. 물론 이 경우에는 병역 면제의 범위는 상당부분 좁혀져야 하는 쪽으로 제도의 성격을 정의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5.3 병역 비리

최근 각종 매체에서 보도되는 운동선수와 관련된 소식들을 살펴보면, 주로 스포츠와 관련된 소식들과 더불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이 운동선수의 병역비리 문제이다. 사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와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운동선수의 병역비리에

대하여 그 연결 관계 등에 대해 학문적으로 선행된 연구는 전무하였다. 이와 관련된 칼럼을 집필한 바 있는[28]에 따르면, 운동선수 병역 비리는 병역특례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오던 사회적 문제로써, 각종 부상이 많은 운동선수들이 이를 악용하거나 혹은 면제 혜택 기준에 맞도록 부상 내용을 조작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의 불법행위 평가 기준은 무엇보다 해당 행위의 목적이다.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하여 부상에 대한 치료 행위를 시행하였는가 불법행위로써의 평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치료의 주체인 주치의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진단서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과거 적발된 바 있는 각종 운동선수 병역비리 사건들을 살펴보면, 주치의의 진단서 위조에 대한 내용이 항상 존재하였으며, 그 영향력은 운동선수의 병역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매우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큰 액수의 돈이 지불된 바 있는 사실들에서 이와 같은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운동선수 대상 병역 혜택 제도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논의점은 병역 비리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부분이다[8]. 병역 혜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운동선수의 국위 선양과 그들의 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병역 혜택 제도를 마련하였다. 즉, 적용의 기준을 상대적으로 낮춘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처벌기준에 대하여 일반인과 동등한 기준에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 활동하던 스포츠 스타 A는 해외 장기 체류를 이유로 입대를 연기하던 도중, 국외이주 사유가 발생하면서 국외 여행 기간 연장이 허가되면서 최고령 입대 연령을 넘어서게 된다. 하지만 해당 선수는 올림픽 대표팀으로 선발되면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사실상 병역 면탈에 대한 편법이지만, 이를 처벌하거나 병역에 상응하는 어떠한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병역 의무 기준에 비하여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처벌은 오히려 운동선수로 하여금 병역 의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그들의 직업을 위하여 할애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상황은 운동선수로 하여금 병역의 의무 고유의 취지에 대하여 이해하기 보다는 병역에 대하여 기피의 대상으로만 이해하도록 만드는 악영

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앞서도 언급한 바 있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평등권의 기준에도 어긋나는 바, 이 역시 위헌의 고려사항이라 할 만하다 하겠다.

처벌과 관련된 세 번째 논의점은 병역 비리자 처벌 이후에 대한 사후 조치이다[27, 28]. 사실 병역 비리자의 처벌 사후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그 양과 질적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에서 병역 비리는 이제 그다지 큰 문제점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으며, 반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회가 그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병역 비리는 분명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 또한 매우 강력하게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누구도 이들의 교화와 사회로의 올바른 복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 그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부산지역 연고의 프로야구단 선수인 B는 병역비리로 구속된 이후 3년만의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충을 언론을 통하여 토로한 바 있다[29]. 따라서 병역 비리에 대하여 불법의 의도와 행동이 확인되어 처벌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로의 복귀에 상당한 제한이 따라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들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또 다른 제도적 절차가 마련됨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병역 비리를 포함한 각종 스포츠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후 관리 제도를 신설하여, 이들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제도상 결함 발생시 보완점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7]. 아울러, 장래 병역 자원, 즉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병역 의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의 신설 또한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4 군 / 경찰 소속 프로스포츠 조직에 대한 정의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정체성의 정의가 요구되는 존재 한 가지를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다양한 종목의 프로스포츠 구단과 경쟁을 하고 있는 상주상무프로축구단과 그 외 군·경 소속의 프로스포츠 구단의 법률적 지위 정의이다[30]. 이들의 존재의 재정의

가 요구되는 것은 특정 집단을 위한 구성원의 기본 의무에 대한 형평성 위반이 심각하게 의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동선수에 대하여 그 직업적 특성을 인정하고 그들에 선수로서의 생명 연장을 위해 또 다른 제도를 마련했다는 취지에서는 이 제도는 매우 합리적으로 판단되지만, 만약 운동선수들이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얻는 또 다른 혜택이 있다면, 이는 다른 종목 더 나아가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의 형평성을 놓고 볼 때, 심각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의 심해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상주상무프로축구단은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위리그 진출 시 지출해야하는 승격 가입금 5억 원과 더 많은 연회비(1억 5천만 원)을 지출해야한다면, 과연 일반병에 대한 복지와 비교할 때 충분한 형평성을 갖는가에 대한 딜레마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시 운동 활동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운동선수에게 국가 안보에 관련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현실적인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군경 소속 스포츠 조직이 운동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국가 안보의 측면에 그 목적을 두는 것이라면, 1부 리그 진출 제한 등과 같은 철저하게 아마추어리즘을 고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실업 및 각종 아마추어 스포츠 분야는 철저하게 아마추어리즘을 바탕으로 함으로써 제도 고유의 취지를 살릴 수 있고, 동시에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훌륭한 조직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개선될 때, 국가 안보의 상황에 보다 나은 임무를 부여하고, 동시에 이들이 국가 안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제도 고유의 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31]

6. 결론

6.1 결론

최근 해외에서 맹활약하던 유능한 운동선수가 자신의 병역의무에 임하는 과정 중에 타 종목 선수와의 형평성에 대하여 불만을 터뜨린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 선수는 국방부에서 명한 바에 따라 입대함으로써 일단락되었지

만, 현행 운동선수 대상 병역 제도는 그 형평성에 있어서 분명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문 운동선수에게 병역의 의무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자, 소속 구단에게는 반드시 철저히 대비하고 수립해야 하는 신개념의 조직 운영 전략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그 기준점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35].

이에 본 연구는 운동선수 대상의 병역 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법을 기초로 하는 법제도에 근거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보다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남자 운동선수 대상 현행 병역법에 대한 법제도적 형평성은 헌법적 근거를 만족하고 있는가? 둘째, 대한민국 남자 운동선수 대상 현행 병역법에 대한 법제도적 합리성을 논할 때, 어떠한 불합리성이 존재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결코 단기간에 도출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제한된 시간과 재원 내에 본 연구 기간에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 불합리성이나 편향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운동선수와 그들의 활동을 통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하고, 동시에 국가의 기본 의무에 대하여 평등한 부과와 대한민국 정부의 복종의 요청은 그 어느 과정에서도 불법이나 불합리성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병역 제도에 대하여 불법이거나 혹은 제도상 결함에 따른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둘째, 헌법적 근거만을 놓고 적용할 때는 절대 그 형평성을 완전히 만족했다고 답변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평등하게 받아야 할 병역 의무 가운데 다른 형태로나마 복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기회 자체가 이미 형평성을 무너뜨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선수 조직 내외적으로 일반인과의 형평성과 운동선수간의 형평성 등 두 가지 측면에서 형평성이 상당부분 훼손되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비교적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병역 비리와 운동선수라는 특수한 관계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하여 보완을 위하여 운동선수의 병역과 금전 등 이중혜택 금지, 병역 비리 사후자 관리 제도 신설, 군경 스포츠 조직의 차별없는 아마추어화 등의 제도에 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연구의 말미에 제시하였다.

6.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과정과 결과는 오직 연구자의 주관과 학문적 지식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종합된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제도 현장에서 적용하는 지식이나 경험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특히, 헌법에 기초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사안의 판결에 대하여 당시의 사회적·정치적 경향이 다소 고려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사건의 판결이나 이에 대한 주관 역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소 변할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상주 군경소속 프로스포츠 조직에 대한 견해는 절대적으로 본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주장이 우리나라 스포츠 현장이나 혹은 이를 통제하는 법 환경을 절대적으로 대변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본 연구에서 몇 가지 주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스포츠 조직의 법률적 지위의 정의에 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주장일 뿐임을 미리 알려두는 바이다.

셋째, 운동선수 대상의 병역 제도 관련 선행연구에 관한 자료를 조사함에 있어서 다소간의 부족함이 드러남이 사실이다. 이것은 운동선수 대상의 병역 제도에 대한 언론의 칼럼이나 사실 같은 주관적인 주장들은 존재하지만, 객관적이며 논리성에 근거한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는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작성된 본 연구가 이러한 부족한 연구 환경 개선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support of internal research support foundation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5.

REFERENCES

- [1] Y. G. Kim. "Military service duty as a basic duty

- and rational rewards for the mandatory military service.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2012.
- [2] T. J. Na. “Philosophical Discussion on the Execution of Military Service in Republic of Korea Army and the Development of Military Service Policy,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Vol. 16, No. 4, pp. 149-170, 2011.
- [3] S. J. Shon. “A legal study on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in athlet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Vol.9 No.2, pp. 109-121, 2011
- [4] Jae-Sik, Yang. “Perspectives of Theories of Justice on Military Service Privileges of Korean Athletes, Ph.D. dissertation”, Chung Nam National University. 2014.
- [5] B. J. Kim,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Military Serve System, The Professors’ Research”, Vol. 24, pp. 291-312. 2002.
- [6] D. Kim & M. Sung. “Improving military sport policy for young talented athletes,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Vol. 18, No. 3, pp. 51-73. 2015.
- [7] S. T. Kim, “Constitutionality of Intensive Management of Public Figures’ Duty of Military Service, The Constitutional Research”, Vol.19 No.4, pp. 357-392, 2013.
- [8] E. K. Kim. “New Issue in the field of Korean Sports Law regarding the Korea EU FTA -Focused on the problem of the sports athletes contract.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Vol.12 No.4, pp. 297-316. 2009.
- [9] J. Park., C. H. Jeon. & S. W. Park, “A Study on the Military Evasion Crime and th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It, Korean Journal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Vol.5 No.3, pp. 276-287.
- [10] Y. J. Mok. “Why did Korean Governments make more difficult to serve the country with military?” Dailian, <http://www.dailian.co.kr/news/view/523964/?sc=naver> (Aug 18th, 2015)
- [11] T. P. Klassen., A. R. Jahad, & D. Moher. “Guides for reading and interpreting systematic reviews, Archives of Pediatric & Adolescent Medicine”, Vol. 157, No. 7, pp. 700 - 704, 1998.
- [12] T. Chung. & K. M. Cho. (2015).“ A Legal Approach on the Illegal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ctions of Sport Organization against Its Member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 Vol. 54, No. 1, pp. 303-313. 2015.
- [13] J. T. Kim., T. Chung., I. Kwon. & S. K. Park.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Wrong Calls Types and Civil Liability of Athletes for Wrong Call during Olympic Games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Vol. 23, No. 2, pp. 689-704, 2014.
- [14] S. C. Yoon. “The latest Issues on the Sport Law : Doping und zivilrechtliche Haftung.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Vol. 13, No. 3, pp. 11-33, 2010.
- [15] I. S. Hong & J. H. Kim. “Gemeinwesen und Grundpflichten, Law and policy”, Vol. 19, No. 2. pp. 457-492, 2013.
- [16] S. M. Lee. “Opportunity Costs and Burden Distribution in the Conscription System,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Vol.5 No.2, pp. 191-223, 2011.
- [17] H. T. Oh. “A Study on Equitable of Military Service”, Constitutional Study, Vol. 11, No. 4, 183~235.
- [18] K. I. An & D. I. Oh. “The Level of Contribution of Elite Sport After Establishment of Korea Armed Forces Athletic Corps, Korean Journal of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 Vol. 15, No. 3, pp. 53-67, 2010.
- [19] K. I. An, D. I. Oh.& J. H. Kwag. “The Study on the Phoenix Div. of Korea-Focused on the Elites, Korean Journal of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 Vol 48, pp. 13-13, 2010
- [20] I. Kang, “The Concept of Basic Duty in the Constitution, Yonsei Association of Legal Research”, Vol. 25, pp. 157-193, 2015.
- [21] Supreme Court of Korea 2014. 3. 17. 2014HeonBa 101, Final Report #4.
- [22] Supreme Court of Korea 2010. 11. 25. 2006HeonMa 328, Final Report #446.
- [23] H. Yang. “Constitutionality of ‘Male only’ Conscription in Korea: A View from the Constitutional Case of

- Military Act Article 3 Paragraph 1,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Vol. 75, pp. 135-172. 2008.
- [24] Y. R. Choi. "Study on the role of Korean Armed Forces Athletic Corps i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military sports,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2000.
- [25] O. J. Hwang. "The Military Service Special Cases on National Baseball Team", Segyeilbo,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9/03/31/20090331004392.html> (Mar 31, 2009)
- [26] S. M. Lee. "The Prospects and Suggestions for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Military Service System,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Vol. 14, No. 2, pp. 133-162. 2005.
- [27] K. S. Kwag. "The proper time to consider alternatives of Special Cases on Military Service for Gold Medalists of the Asian Games". <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367> (Oct 12, 2014).
- [28] D. Kim.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Player Selection in University Sports and Entrance Examination System of Student Athletes,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Vol 16, No. 1, pp. 57-81, 2013.
- [29] H. H. Choi. "Social troubles on Military Services of Sport Stars", The website of Hankyung,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1093189B> (Jan 19th, 2015).
- [30]. Y. J. Jung. "Conscientious Objection,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Vol. 18, No. 3, 2012.
- [31] P. Y. Hwang. "An analysis on the illegal evasion cases and preventions against it",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http://www1.mma.go.kr/www_mma3/webzine/71/html/06.html (Retrieved Feb 14, 2016)
- [32] J. Kim. "A story of Second Base Salary Man", The Hani, http://h21.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30021.html (July 12, 2007)
- [33] S. R. Ha. "Reborn of the Phoenix Div. What else?" Sport Chosun,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211280100178110014594&servicedate=20121127> (Nov 27, 2011)
- [34] S. M. Lee. "Are the Koreans, will go to military, going to the Pro Golf Tour?". Edaily, <http://starin.edaily.co.kr/news/NewsRead.edy?SCD=EB32&newsid=01285766606289984&DCD=A20302> (Nov 27, 2014).
- [35] L. S. Kim, "Converge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rporate Strateg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17-26, 2015.

황 호 영(Hwang, Ho Young)



- 1978년 2월 : 공주사범대학 체육교육과(학사)
- 1986년 2월 : 공주사범대학 체육교육과(석사)
- 1997년 7월 : U.S.S.A(박사)
- 2013년 5월 : 국립 공주대학교 생활체육지도학과 교수
- 2013년 5월 : 국립 공주대학교 체육

부장

- 2016년 3월 : 현 국립 공주대학교 생활체육 지도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교육
- E-Mail : Hyhwang@kongju.ac.kr